

# 대한민국 재외선거 - 이렇게 합니다.



제공일자 2010. 8. 4.

총 1면

[www.nec.go.kr](http://www.nec.go.kr)

☎82-2-503-0648

FAX82-2-504-5350

## 금품 제공의 의사표시만으로도 기부행위 위반죄에 해당됩니다

-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는 금전·물품·재산상이익 제공의 의사표시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는 금전 등이 실제로 제공된 경우 뿐 만 아니라 제공의 의사표시나 약속이 있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제공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의 의사 여하에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며, 「제공의 약속」은 현실적으로 제공되지는 않았으나 장차 제공하겠다는 의사와 상대방이 이것을 수령하겠다는 의사가 합치되는 것을 말합니다.

-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는 당원을 모집하면서 일정기간의 당비를 대납해 주는 행위 등 당비의 대납행위도 포함됩니다.

당비 대납행위는 당원으로서 권한 행사를 위한 재산 출연의무를 제 3 자가 대신 납부하는 것으로서 당비 상당의 재산상 이익이 제공된 것이므로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합니다.

### ※ 당비 대납 관련 기부행위 유형

- ▶ 당원을 모집하면서 일정기간의 당비를 대납해 주는 행위
- ▶ 당원으로 하여금 당비를 납부하도록 한 후 당비 보전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 타 당원모집을 부탁하면서 당비대납금 및 사례금 명목으로 금품·항응 제공행위

< 자료제공 중앙선거관리위원회([www.nec.go.kr](http://www.nec.go.kr)) >

재외선거 홈페이지([ok.nec.go.kr](http://ok.nec.go.kr))가 오픈되었습니다.